

납북자 []결정 []비결정 통지서

신고인	성명(한자) ()		주민등록번호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	
	납북자와의 관계	납북자의		

납북자	성명(한자) ()		생년월일	
	등록기준지		성별	[]남 []여

심사·결정 사유

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납북자로 []결정 []비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6·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

직인